



중복참여와 반복참여의 제한

① 정의 및 원칙

○ 정 의

- 중복참여란 '동일한 기간'에 두 개 이상의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것
- 반복참여란 2년을 초과하여 동일한 또는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는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

○ 원 칙

-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, 참여자가 민간일자리로 이동하지 않고 계속 직접일자리사업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직접일자리사업에 대한 중복 참여 및 반복참여를 배제하는 것이 원칙
- 또한,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바로 직접일자리사업에 재참여하는 것은 참여자를 정부 지원에 의존적으로 만들 위험이 크므로, 반드시 취업 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 뒤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도록 할 것

② 제한내용

① 중복참여의 제한

《 대상 사업 》

- 모든 직접일자리사업의 중복참여를 제한하되, 근로시간에 따라 전일제, 시간제, 간헐적 사업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중복참여 제한여부 등에 차등을 둠
- 다만, 소득보조형 직접일자리사업의 경우 근로시간이 일부 단축되어도 전일제로 분류

[근로시간에 따른 직접일자리사업 분류]

구 분	분류 기준
전일제	주 30시간 이상 참여하는 경우
시간제	주30시간 미만만 참여하되 참여하는 요일 등 참여 시점이 주기적으로 정해져있는 사업
간헐적 사업	별도의 주기적인 사업 참여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필요에 따라 참여하거나 주말 또는 특정일에만 참여하는 사업

《 제한 내용 》

- 전일제 사업에 하나라도 참여할 경우, 다른 사업과 참여일이 겹칠 경우 중복참여 불가능
- 시간제·간헐적 사업의 경우 시간대가 중첩되지 않을 경우 중복참여 가능
- 다만 시간제·간헐적 사업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간에 3개 이상의 사업 참여시 참여 시간과 무관하게 중복참여로 간주

📁 **전일제 사업 참여의 경우**

- 전일제를 월, 수, 금 참여하고 시간제를 월요일에 참여 ⇨ 중복
- 전일제를 월, 수, 금 참여하고 시간제를 화요일에 참여 ⇨ 중복 아님

📁 **시간제·간헐적 사업 참여의 경우**

- A 시간제 사업, B 시간제 사업, C 간헐적 사업 참여 ⇨ 중복
- A 사업(시간제) 월수 각 3시간, B 사업(시간제) 화목 각 3시간 참여 ⇨ 중복 아님

② **반복참여의 제한**

《 대상 사업 》

- 원칙적으로 모든 직접일자리사업의 반복참여를 제한

《 예외 사유 》

- **아래의 사업은 사업 특성에 따라 반복참여를 예외적으로 허용**

[사업 특성에 따른 반복참여의 허용]

	상당한 사유	해당 사업
1	노인, 자활지원대상 등 반복참여가 필요한 소득보전 일자리	자활사업, 노인일자리(재능활동형 외)
2	자원봉사를 진행하기 위한 일자리로, 실비 수준의 금전만을 지급받는 일자리	아동안전지킴이, 사회공헌활동지원, 전통스토리계승 및 활용(이야기할머니), 문화관광해설사육성, 노인일자리(재능활동형),
3	장애인, 노인 등 취약계층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들과의 장기적 관계 형성이 서비스 제공에 핵심이 되는 일자리	노인돌봄서비스(노인돌봄종합), 장애아동가족지원(발달재활서비스), 장애인활동지원,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(자치단체 경상보조), 아이돌봄지원, 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(노인돌봄기본서비스)

4	해당분야 전공지식 등이 참여 요건으로 반드시 수반되는 일자리	환경지킴이(자연환경해설사), 업종별재해예방(안전보건지킴이), 초등학교스포츠강사배치지원, 문화예술교육활성화, 산림재해일자리(산불재난특수진화대)
---	--	--

- 반복참여가 제한되는 사업이라도, 다음과 같은 인적속성이 있는 자의 경우 반복참여를 허용
 - 65세 이상 고령자, 중증장애인
 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, 질병 정도 등에 따라 반복참여를 허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
- 참여자 모집을 위한 최초 공고 이후 참여자 부족으로 재공고를 하는 경우 반복참여자라 하더라도 선발 총점의 20%이상 감점하여 선발 과정 진행 가능

《 제한 내용 》

- ① 직접일자리사업 반복참여는 최근 3년간 2년만 허용하고, 2년 초과 시 1년 참여 제한
 - 참여시작 예정일을 기준으로 직전 3년 이내에 2년 이상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으면서, 최근에 참여한 직접일자리사업 종료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청자는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제한
 - 해당년도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일수가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 1년 참여자로 간주하되, 참여일수는 참여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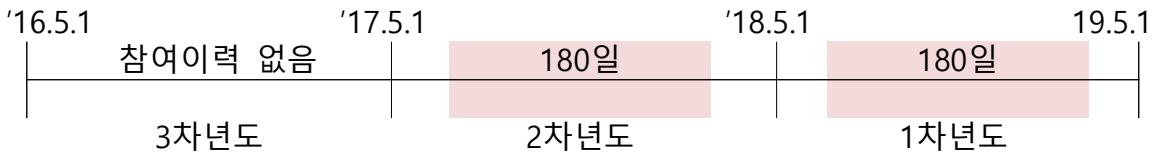
간 중의 주말, 공휴일, 병가일, 휴가일, 경조일, 훈련일 등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

- 참여일수는 특정한 하나의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일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,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의 모든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일수를 합하여 계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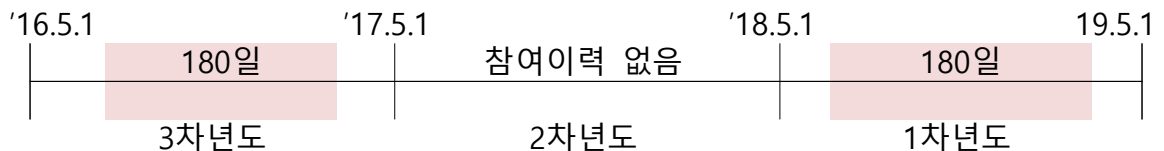
📁 **산정기준 예시(참여시작 예정일이 '19.5.1일인 경우)**

❖ **반복참여제한에 따라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**

- ① 직전 2년도 간 180일 이상 참여한 경우



- ② 최근 3년간 2년 이상(1차년도, 3차년도)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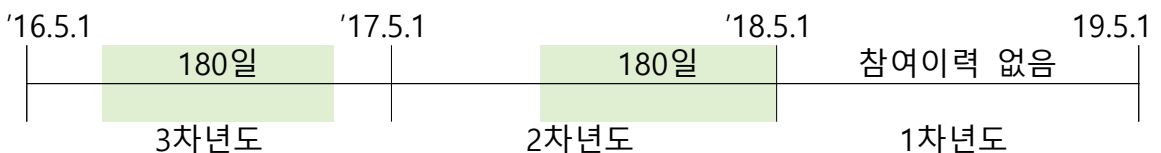


❖ **반복참여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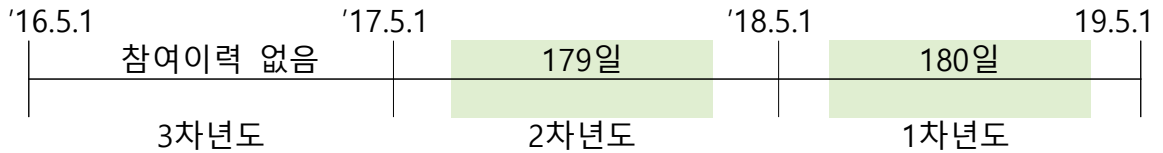
- ① 직전 2년도 간 180일 이상 참여한 뒤 마지막 참여일('18.5.1) 후 365일이 지난 경우

* 소득보조형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뒤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제외

* 반복참여 제한 기간 내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제외



② 직년 2년간 일자리사업에 참여했으나, 1개 년도에 180일 미만 참여한 경우



② **반복참여 제한기간 내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에만 반복참여 제한기간 도과 후 다시 직접일자리사업에 다시 참여 가능**

* 취업성공패키지,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, 고령자인재은행 운영 고령자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,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운영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,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,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, 대한노인회를 통한 취업 지원프로그램,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등 중앙부처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

* 단, '19.1.1 이후 새로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자만 해당. 참여시작일이 '18.12.31 이전인 참여자는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반복참여 제한 기간 도과 후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 가능

③ **반복참여 제한기간 내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,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였다는 사실을 증빙하기 전까지**

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

- ④ 소득보조형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였던 자가 '실업급여'를 수급한 뒤 다시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 참여제한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취업지원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 하여야 함

-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경우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일 기준 90일 간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제한

📁 **실업급여 수급에 따른 제한의 예시**

- ❖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종료 후 실업급여 최종 수급일로부터 50일 후에 다시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⇨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불가
- ❖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종료 후 실업급여 최종 수급일로부터 30일 후에 취업지원 프로그램 수강, 다시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⇨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가능
- ❖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종료 후 실업급여 최종 수급일로부터 100일 후에 다시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⇨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가능